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지역)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 설계·제조·공급·연구·판매·지원 등과 관련된 기업이 모여 반도체산업의 집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3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 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도체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의 수급 위기 대응 및 비축·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관련 기술 및 인력 해외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에 대한 민간의 시설·연구개발 투자 촉진 정책 및 금융 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설계 인프라 구축 및 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 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보완

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제4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경제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계획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행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반도체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을 반도체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 현황 및 발전 전망 관련 정보를 보유
· 운용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제6조(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관리해
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반도체 시장의 동향 및 전망
2. 반도체산업의 수출입 동향
3. 반도체산업의 설비투자 동향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
여금 반도체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업연구원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6. 그 밖에 반도체산업 관련 통계 작성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7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국방부
5. 산업통상부
6. 기후에너지환경부
7. 국토교통부
8. 중소벤처기업부

9. 기획예산처

10. 지식재산처

11. 금융위원회

12. 국무조정실

13.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아닌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

은 경우

5. 제15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상의하여 필요한 분야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② 각 전문위원회 및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지명한다.

1. 위원회 위원

2. 반도체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 반도체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사전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과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조정 및 협의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변경·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에 관한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검토·조정 및 협의 사항으로 위임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3.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4. 국토교통부 차관
5. 기획예산처 차장
6. 지식재산처 차장
7. 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조정위원회장이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8. 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조

정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정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⑦ 조정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⑧ 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조정위원장이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정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반도체클러스터 및 규제개선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 ② 각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소위원회

가.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변경·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규제개선소위원회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에 관한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조정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소위원회 소관 분야의 전문가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유지 의무) 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6조(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지원단 단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 조성, 발전방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반도체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및 사업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4.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지역의 반도체산업 현황 및 관련 기

반시설 현황

5. 반도체클러스터의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6. 반도체산업 관련 업종의 비율 및 배치 계획을 포함한 반도체산업의 집적 계획
7. 반도체산업의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9. 환경 보전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사업시행자 지정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

⑥ 법 제11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그 밖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승인하거나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된 전체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

려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단순 착오, 계측 오차 등에 따른 지번, 지목 또는 면적을 정정하려는 경우

5.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용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지정 목적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사항

2.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정 해제되는 반도체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나.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일 및 해제일

다.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사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확보, 양성 및 정주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기관·지원기관의 공동 연구개발, 정보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제20조(산업기반시설의 우선 지원 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전력공급시설: 반도체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 공급(지중화 포함) 및 에너지 효율 제고에 관한 시설로서,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 천재 지변 등 사고에 대비한 이중화 시설, 탄소중립 이행 및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에 기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용수공급시설: 반도체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공급에 관한 시설로서 취수, 정수, 송·배수, 저장 및 재이용 등에 관한 시설과 용수 공급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반도체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집, 처리, 재이용, 방류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설과 환경오염 예방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도로시설: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인력·물류·장비 등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및 교통 관련 시설

로서 반도체클러스터와 외부 교통망 또는 물류 거점을 연계하는 데 기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그 밖의 시설: 반도체클러스터의 공동 이용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가스 공급, 집단에너지, 공동구, 반도체 생산활동과 연계된 정보통신 등에 관한 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설별 총사업비(설계·공사·감리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비율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고에 대비한 이중화 시설의 조성 또는 확충에 해당하는 경우
2. 반도체클러스터의 공동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공급망 안정성 및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경우
3.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로서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경우
4.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점유 면적 또는 입주 기업체 수가 100분의 30 이상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 경우
5. 국가 안보 및 산업 시책상 중대한 필요가 있어 위원회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클러스터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 발전, 산업 여건 변화 또는 시설의 규모·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범위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비율의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범위 및 지원비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한다.

제21조(산업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지원)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2. 반도체클러스터 내 부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업
3.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MOU) 등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확정 한 기업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반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절차를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체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고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되, 같은 영 제5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 지원의 신청 절차, 지원 기준, 지급 방법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반도체클러스터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반도체클러스터 부지의 매입 및 임대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저렴한 임대 부지를 공급하여 혁신발전을 지원하려는 경우
2. 법 제2조제1항 각 목에 따른 반도체 생태계의 조속한 구축을 위하여 공공 주도의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반도체 관련 연구시설, 대학 등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을 위한 집적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의 임대료 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지 매입의 신청 절차, 매입

가격 산정 및 관리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 법 제1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서, 반도체산업 관련 사업장에 신규 투자를 이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6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법 제17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수도권 외의 지역에 조성된 반도체클러스터 내 근로·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지원
2.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성능 고도화 및 사업화 단계 전환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지원금 및 이에 연계된 재정·금융 지원
3. 그 밖에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27조(산업기반시설 설치·확충계획의 반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확충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반시설 구축 요구안을 제출할 수 있다.

1. 반도체클러스터 및 주요 사업장별 예상 전력·용수 수요량, 도로 교통량 및 폐수·폐기물 발생량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중화 시설 구축의 필요성
3. 그 밖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중화 시설”의 설치 및 확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력망: 단일 송전선로 및 변전소의 장애 발생 시에도 중단 없는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비 송전선로 및 예비 변전소의 구축
2. 용수망: 취수원 또는 관로의 사고 발생 시에도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비상 관로 및 비상 저수시설의 설치
3. 폐수처리계통: 처리 시설의 오작동 또는 관로 사고 시에도 가동 중단 없는 폐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비 처리 시설 및 비상 저류 시설의 설치
4. 가스·화학물질 공급망: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고압가스, 화학물질 등의 중단 없는 공급을 위한 예비 배관로 및 비상 저장 설비의 구축
5. 정보통신망: 데이터 유실 및 네트워크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화된 전용 통신 선로 및 보안 서버의 구축
6. 그 밖의 시설: 사고 발생 시 생산 공정의 치명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안을 받은 경우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반시설의 설치·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안이 법 제18조제1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각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또는 관련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반도체 위탁생산 및 후공정 발전시책)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발전시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2. 법 제2조제1항다목에 따른 반도체 설계·설계자산·소프트웨어 산업,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반도체 패키징·검사 등 후공정 산업
-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발전시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위탁생산 및 후공정 제조 공정의 첨단화·고도화를 위한 설비 투자 및 연구·실증 인프라 구축 지원
2.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동개발 지원
3. 첨단 패키징 기술, 핵심 소재·부품·장비 및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위탁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실증·인프라, 공공기관 시범도입·시제품 구매 및 사업화 지원
4. 위탁생산 및 후공정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재직자 역량 강화 및 고용 안정 지원
5.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를 위한 해외 판로 개척, 국제 표준화 대응 및 기술 협력 지원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생산 및 후공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규제 개선의 신청·심의)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기관 및 지식산업센터(이하 “기업 등”이라고 한다)가 규제 개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제 개선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규제 개선 신청 내용을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신청 내용 및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의견 등을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규제 개선의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 규제 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개선 신청 내용의 구체성 및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
2. 규제 개선을 통한 반도체 연구개발·생산 활동 등의 목적 달성 기여도
3. 해당 규제 개선으로 인한 산업적 파급효과 및 안전·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위원장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또는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규제 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된 규제가 산업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규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제30조(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사업은 위원회가 반도체 산업의 국가·경제 안보 및 신속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우선 선정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업을 말한다.

제31조(공공기관·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려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등 국가·경제 안보 및 공급망 확보 관련 입증 자료
3. 사업의 규모, 추진 체계 및 자원 조달 계획
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한 사유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면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통보가 어려운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인·허가등 신청 당시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한 자료
2. 인·허가등 신청 이후 인·허가권자로부터 받은 회신 자료 또는 진행 현황 소명 자료
3. 인·허가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 시설 조성 및 반도체클러스터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인·허가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쟁,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3.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인·허가권자의 자료 보완 요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처리 계획 수립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인·허가등의 처리를 지체할 수밖에 없

는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인·허가권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로 해야 한다.

⑥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허가등의 신속처리를 심의·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의 시급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2. 인·허가등의 지연 사유 및 처리 가능성

3.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및 환경·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

제33조(공급망 내재화 및 테스트베드 운영) ① 정부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협업하여 개발하는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시설·장비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

2. 연구인력의 인건비 및 연구 활동 운영비

3. 초기 상용화 제품의 시범 생산 및 성능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정부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의 성능 확인, 평가 및 검증에 활용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을 테스트베드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성능 확인·평가·검증을 위한 시설·장비 및 운영 역량

2. 평가·검증 수행을 위한 전담 전문인력 확보 여부

3. 수요기업 연계체계 및 시험·평가 결과의 보안관리 체계

③ 정부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테스트베드로 지정된 기관(이하 “테스트베드 운영기관”이라 한다)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또는 시스템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성능 확인 및 실증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 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테스트베드 운영기관에 대하여 실증시험, 신뢰성 평가 및 성능검증을 목적으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또는 이를 활용한 장비·시스템의 활용 및 구매를 권고 할 수 있다.

⑤ 테스트베드 운영기관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중 반도체 관련 기술을 활용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2. 반도체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소재·부품·장비의 실제 양산 적용이 가능한 민간 기업 및 연구기관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9조의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 및 정보 활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분야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 사업
2. 국내 반도체산업 인력 육성을 위한 해외 기관과의 교육·연수 및 국제교류 사업
3.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4. 그 밖에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법 제3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 등의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 활동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해외 우수인력 수급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연구 비용 지원
3. 해외 우수인력의 출입국 편의 제공 및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지원
4.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구인·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해외 우수인력 및 그 가족의 국내 생활 적응, 주거 안정 및 정착 지원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반도체클러스터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우수인력에 대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반도체 인력 양성 및 숙련 인력 활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과 해당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에 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정관, 시설 및 인력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문성 및 교육 역량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2. 실습 장비 구축 및 유지보수비
3. 교육 전담 인력의 인건비 및 연수비

4. 그 밖에 반도체산업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을 지정할 때 전체 지정 기관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 기관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반도체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및 지원)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특성화대학원, 반도체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반도체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지정 목적 등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반도체특성화대학등에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비용
2. 반도체 관련 기초·응용 연구 및 산학협력 연구에 필요한 비용
3. 반도체 분야 전문 교원의 확충, 산업계 전문가의 교수 요원 활용 지원
4. 법 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로 이전한 대학의 캠퍼스

조성 및 시설 유지보수 비용

5. 반도체 실습을 위한 첨단 장비 및 시설 구축 비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의 세부적인 지정 기준, 평가 방식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함에 있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및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38조(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기준)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반도체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계약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산업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2. 계약학과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의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
3. 반도체 실습 교육을 위한 기자재 구입 및 시설 확충 비용
4. 교육과정 개발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비

-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할 때 해당 계약학과 등의 반도체 산업 인력 수급 기여도 및 반도체사업자와의 협력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교육기관이 설치한 계약학과 등에 대하여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도체 관련 사업의 특별회계로의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회계의 규모를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11조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재정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40조(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관리) ① 법 제36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반도체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표준화 활동 지원
- 2. 반도체산업 관련 전시회, 컨퍼런스 등 시장 개척 지원
- 3. 반도체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지원 및 이차보전 사업

4. 그 밖에 위원회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수탁기관을 통하여 수납하며, 세출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

제41조(특별회계 예산의 이월)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42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세출 관련 예산의 지출·결산·자산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관리 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

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다른 특별회계를 통한 사업 운용)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별회계”란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말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환경개선특별회계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회계

제44조(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제출 기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출입·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피검사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사의 목적, 기간 및 장소
2. 검사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3. 검사 범위 및 내용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공무원은 검사 종료 후 그 결과의 요지를 서면으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

라 반도체클러스터 내의 인·허가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해당 반도체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반도체 관련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규제 개선 신청의 접수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의 접수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외 전문인력 조사·분석 결과의 관리 및 활용 지원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5.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의 접수
6.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지원 신청의 접수
7.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과 해당 업무의 범위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6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250	500	1000